**<2024년 관리감독자 교양자료>**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의의**

1. 중대재해처벌법 ’22.1.27부터 시행(특별형법)

0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0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제1항 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1)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4)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1)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0개 조문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주요이슈 점검**

1.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건설원청사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선고 (2023.4.6 고양지원, 중처법 위반 산업재해치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건물5층 내부 개구부에서 안전난간 해체 후 총 94.2kg에 달하는 철근 묶음을 내부로 당기던 중 철근이 벨트에서 이탈해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작업자도 추락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징역,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반:

시행령 제4조제3호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 (위험성평가)/ 시행령 제4조제5호 나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시행령 제4조제8호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벨트) 미지급,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불이행(작업계획 미수립, 안전대 미지급)/ 비상대응 매뉴얼 미비(안전대 미지급, 추락사고 급박한 위험)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지도조언 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산안법 시행령 제15조)

1.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대한 확인, 감독

5.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업무 등) ①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법 시행령 제53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급박한 위험(산안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경우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을 측정하지않았거나 적정공기기준을 준수하지않아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유해물질(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2.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도급인 대표 징역 1년 실형선고(23.4.26, 마산지원, 중처법 위반, 산안법 위반)

〮크레인으로 1.2ton 무게의 방열판을 낡은 섬유벨트에 묶어 인양하던중, 섬유벨크가 끊어지면서 낙하한 인양물이 수급인 작업자를 덮쳐 사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불이행,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능력평가 불이행

〮대표가 경영책임자이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1.5월에도 사망사고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3호 판결, 원청건설사 대표(시너지건설) 징역1년, 집행유예 3년(23.6.23, 인천지법, 항소심 진행중)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가설지지대)가 쓰러지면서 하청 작업자 타격하여 사망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업무절차, 예산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위반

4.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 원청건설사 대표(만덕건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23.8.25, 마산지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가압장개선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토공사를 하도급, ’23.5.19 터파기 공사중 하청근로자가 굴착기와 담장에 협착되어 사망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마련과 평가관리,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위반

5. 중대재해처벌법 5호,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사건: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신청, 송치사례

〮’21.9~’22.2 유성케미칼에서 공급한 유해물질(트리클로로머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국소배기장치 설치등 안전장치를 완비하지않아, 두성산업근로자 16명,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에게 ‘독성감염’ 증상발병을 초래

〮두성산업 및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등으로 불구속 기소: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 장치도 설치하지않아 근로자들 독성감염에 이르게함> ’22.10.13 두성산업측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흥알앤티 및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불기소: 종사자 의견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재해예방 필요예산 편성하는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 불구속기소: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하여 근로자들이 독성감염에 이르게함

〮유성케미칼 대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등으로 구속기소(법인은 불구속기소)

**Ⅲ 중대산업재해 쟁점실무**

1.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200위 이내 건설회사)

(3)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1회 이상 점검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1회 이상 평가,관리

(6) 산안법상 요구되는 수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반기1회 이상 의견듣고 개선방안마련,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

(8) 중대산업재채 발생 급박한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조치여부 점검

(9)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1회 이상 이행점검

2.주요 중대재해 위험요소

(1)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를 식별, 추락보호프로그램 운영확인

(2) 불량한 시설관리: 시설 노후화, 물질유출, 폭발위험 등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 또는 기술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불러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고,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정리

(3) 밀폐공간: 허가없이 작업을 하거나 위험성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4) 굴착기, 지게차 등 중장비: 종사자들이 빨리 일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할 위험, 작업이 혼재 되지 않도록 주의

(5) 잠금 및 표지부착(Lock Out/ Tag Out): 정비등 작업시 잠금 및 표지를 부착하면 끼임, 충돌 사고에 따른 심각한 부상을 예방

(6) 화학물질: 화학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 필요/ 화학물질의성분, 구매이유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 필요

**Ⅳ. 중대재해 발생시 주요 업무별 대응방안**

1. 병원후송 장례 및 유족지원

① 재해자 긴급 병원후송(119 또는 129 후송, 보건관리자 있는 경우 응급 조치하면서 직접 후송하는 것이 빠를 경우에는 가능)

② 영안실 대기조 편성/상황 공유

③ 유족 연락 및 가족관계 파악

④ 분향소 준비(영안실 제상. 사진 확대 및 조화 조치)

⑤ 변사자는 경찰과 검찰이 검시(형사소송법 제222조)/검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서 부검지시. 검시 후 부검 후 발인 등 장례절차 진행

⑥ 장례비 정산

⑦ 발인 및 장례절차 지원

담당부서 : 공무/협력 회사, 본사 및 현장

2. 현장보전 목격자 진술 확보

① 즉시 작업중지/근로자대피/위험요인 제거/현장보존

② 사고상황조사 : 현장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 사고경위, 해당 공정 작업지시내용, 평소 작업방법, 목격내용, 안전시설, 보호구착용현황, 안전교육 실시여부, 사고관련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 TBM 주요 내용 등 동영상, 인터뷰 조사(3인이상 동의), 진술(녹취) 확보

③ 안전관계서류 확인 및 정리 현장확인(사진, 녹취 등 증거 확보) 도급/하도급계약서, 시공계획서(안전계획서), 위험성평가 및 조치내용, TBM,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안전점검일지, 작업일지 등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 : 안전 및 공사, 홍보실(언론 수사협조 및 재발방지)

3. 중대재해 발생보고

① 경찰서 보고 : 6하원칙에 의거 재해발생 보고(일시, 장소, 인적사항, 재해발생경위, 재해정도)

② 고용노동지청 :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작성(소정양식)(사업장 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재해발생개요, 사고경위, 사고원인, 재해발생상황도) FAX 전송

③ 내부보고(공사시공 상황 및 안전조치, 사고관련 자료 및 사진 대지 첨부)

관계기관 : 경찰서, 현장 관할 노동지청

4. 현장조사

① 경찰서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책임자 확인(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 적용)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확보, 현장 안전 조직도 및 작업지휘관련 상황 확인

- 사고당일 참고인 조사 : 목격자, 작업지휘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장비운전기사 등 문답조사 내용 정리하여 보고

② 고용노동부 산안과 근로감독관과 산안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사고원인, 안전상조치, 보호구지급 등 (적용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기초조사 → 산안공단에서 노동부로 의견서 제출(재해원인, 적용법 조항)

③ 고용노동지청 참고인조사 : 근로감독관이 목격자, 동료작업자, 하청 현장소장 또는 작업지휘자, 원청 안전관리자 상대로 사고원인 및 안전조치(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배치 등) 안전조직, 위험성평가 등 산안법 제38조(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63조(도급인) 적용확인

* 다만, 임의제출자료 검토, 참고인조사등 과정에서 대표이사보고, 결재여부 등에 대한 조작, 사고후 자료작성등 사실관계 왜곡시도가 확인되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신청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매우높아짐(증거인멸,조작혐의)

담당부서 : 현장소장, 현장안전, 현장공사

5. 정기(특별)감독조사

① 고용노동부 광역 근로감독관(사안에 따라서 4명~10명 2~5일 수감

* 안전보건경영체계/안전보건관리체계(조직)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 관리, 법령요지 등

* 안전보건교육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 건설표준안전관리비 (특별감독점검표 참조)

② 특별감독 결과에 대한 확인 : 현장소장

③ 과태료 부과 및 납부/벌금에 해당되는 산안법 위반사항은 별도로 인지사건으로 수사

6.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지원

① 소환조사, 수사지휘영장(압수수색, 통화내역조회, 체포구속)

※임의제출 여부 및 범위는 신중히 검토,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원칙적 제출하고 임의제출자료는 사본과 목록서 작성하여 대응논리 개발등 향후 조사에 대비 필요함> 압수수색 장소는 사고현장 사무실, 본사 대표이사등 경영책임자의 사무실, 비서실, 안전보건전담부서, 사고작업관련 부서 이메일 및 결재서류 관련 서버관리 부서등

> 압수수색 대상은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안전보건관련 위임전결규정, 안전보건관련 결재서류등/ 위험성평가자료, 종사자 의견청취 자료, 안전보건 교육자료 및 일지, 안전보건관련 인력 및 예산관련 자료, 협력업체평가 및 선정관련 자료/ 안전보건관련 이메일, 쪽지, 결재서류, 보고자료 등

> 압수수색시 영장범위를 넘어서는 압수수색이 되지않도록 면밀히 대응,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 및 물건을 초과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 만약 이를 벗어나는 경우 이의제기

② 범죄인지: 중대재해처벌 및 산안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피의자조사 받는 절차임. 하청 현장소장(산안법 제268조), 원청 현장소장(산안법 제63조), 장비사고의 경우 장비회사 대표(산안법 제81조). 대표이사(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전술청취 및 참고인 조사대비> 사고관계자 심리케어 철저/ 경찰, 노동청이 진술청취후 참고인 조사하므로 사고원인 파악 중요(과장된 진술, 불리한 진술, 허위진술 방지)

③ 2명 이상 사망재해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피의자 구속 여부에 대하여는 검찰 지휘 품신을 받게 됨.

담당부서 : 법무팀, 본사 안전

7. 중대재해처벌법 입증서류 준비

①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500명/시공능력 200위 內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산안법 제 36조 위험성평가

④ 필요한\* 예산 편서,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유해·위험요인 개선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부여, 평가기준마련 및 반기 1회 평가 관리

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⑦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 마련

⑧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반기 1회 이상)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⑨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재해예방 조치 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⑩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 이행 여부

⑪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반기 1회 이상)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담당부서 : 본사 안전, 법무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근거 제시

*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 \*위임전결규정 이사회 회의록 \*회사대표에 대한 수사 이므로 관련자 휴대폰, 이메일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음

8. 산안법 등 관련 입증서류 준비

① 법인등기부등본(원 하도급)

② 사업자등록증(원하도급)

③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장비임대의 경우 임대계약서)

④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신고서

⑤ 안전관리책임자선임계

⑥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⑦ 사업주 협의회 회의록

⑧ 안전교육일지(채용, 정기, 변경, 특별)

⑨ 보호구지급대장

⑩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정기검사증등

⑪중량물취급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

⑫사고경위서

⑬목격자진술서(문답형식)

⑭작업지휘자 및 팀장 진술서(문답형식)

⑮사고상황도 및 사진

⑯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지정서

⑰위험성평가 사전회의록

⑱유해위험 작업 사전 안전점검표

⑲작업일지

⑳시공계획서(안전계획서) 등

㉑ 안전보건관리 체계(조직도표)

담당부서 : 현장 안전, 본사 안전부서

9. 작업중지 및 해제신청

① 작업중지(산안법 제55조)

- 부분작업중지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중지명령

- 전면작업중지 :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경우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② 안전작업개선계획서 제출 및 작업중지해제요청(산안법 제 55조 2항) 또는 안전/보건 진단명령 : 고용노동지청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신속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을 받은다음, 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안전환경팀, 작업중지해제 및 안전진단

10. 합의(가합의) 처벌불원서

① 합의금 산출(자문노무사)

② 합의팀 구성(협력회사 임원 및 협력사 현장소장, 자문노무사, 본사 경영지원팀, 안전부서 지원).

※신속한 합의의 중요성( 감경사유: 사건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경우, 위반사항 시정, 합의 및 피해회복 등/ 가중사유: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정도, 유사한 사고 다수발생, 사고규모 및 중대성, 피해회복 및 구호조치 미흡, 사고책임 및 비난 가능성, 동종전력)

③ 가합의(금액합의) 합의금의 전체 지급 수준을 먼저 결정하고, 전체 합의금 중 장의비(2천만원 이내에서 실비지급) 선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유가족이 수급권자 및 상속권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공증 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가합의 진행.

④ 처벌불원서(탄원서)징구

담당부서 : 협력회사, 관리/공무

11. 합의금 지급(공증) 산재/근재 청구준비

①합의서 작성

②합의공증시 준비서류

∎ 회사대표(법인) 위임장 1부(공증용)

∎ 대표(법인) 인감증명서 및 도장(공증용)

∎ 수입받은자 주민등록증 각1부 및 도장.

∎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공증용)

③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유족연금 설명/안내

*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외국인 또는 형제자매 등)의 경우에는 산재유족급여 일시금을 선지급하고 회사 대체지급청구

④산재 청구 준비서류

∎ 유족보상(연금/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

∎ 사고사실학인원(경찰서)/119구급증명원(소방서)

∎ 재해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혼인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산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 상속권자 및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중국국적의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거구호민증, 결혼증

∎ 임금(노임)대장사본(사망직전 4개월분)1부

∎ 근로계약서/목격자진술서 1부

∎ 작업일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⑤근재보험 청구

∎ 산재보험급여 수령이후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받고 위 (4)항의 서류 등 구비하여 청구

담당부서 : 협력회사/임원, 관리/공부